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4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 1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3. 1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3. 18 충무위원회 수정안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세계적인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로서 대내외적으로 공통나라고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전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골자

-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람 및 매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고성군공룡전시관내에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고성군공룡전시관 전시물 구입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내지 제2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세계적인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서 대내외적으로 공룡나라 고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하이면 덕명리 8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고성군 공룡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3조(용어의 정의), 제6조(개관 및 휴관), 제8조(관람료),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사항, 공룡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조례안 제6조에 전시관 휴관일에 1월1일, 설날·추석연휴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날에 꼭 휴관해야 되는지?
- 답 : 일요일 등 법정공휴일은 휴관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등을 그때 시기를 보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 : 전시관 건립목적에 맞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답 : 삭제토록 하겠음.
- 문 : 공룡전시관이 준공되면 군립공원과 연계해서 관리 운영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 답 :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 : 조례안 제15조에 가부 동수일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답 : 타조례와 정관 또는 규약을 보면 가부 동수일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했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3.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 | |
|--------------|---------------------|
| 의안번호 | 제 845 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4. 3. . (제 회) |

| | |
|---------|--|
| 의 결 사 항 | |
|---------|--|

고성군공동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제 출 자 | 송정현 위원회 6명 |
| 제출년월일 | 2004. 3. 18. |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845 |
|----------|-----|

제출년월일 : 2004. 3. 18.
제출자 : 송정현위원외 6명

1. 수정사유

-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중 “관람”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시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사항(안 제15조)
- 전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중 “이용하는것”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것”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보호 및 전시물을 관리운영한다.

안 제6조제1항중 “전시품”을 “전시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중 “시설물이용자”를 “시설물사용자”로 하고, “주의의무 을”을 “주의의무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관람자가”를 “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가”로 한다.

안 제15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15조제3항중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으며,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9조제2항중 “가입할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 <p>제3조(정의)----- -----.</p> <p>1. ----- -----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
| <p>제4조(관리 및 운영등) ①(생략) ②군수는 전시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다.</p> | <p>제4조(관리 및 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②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보호 및 전시물을 관리 운영한다.</p> |
|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월1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 할 수 있다.</p> |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 ----- 전시물 -----.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삭제> <삭제></p> |
| <p>제14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이용자는 전시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람자가 전시관의 각종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p> | <p>제14조(변상조치) ①----- 시설물 사용자----- -----주의 의무를 -----. ②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가 ----- ----- -----.</p> |

| 제정안 | 수정안 |
|---|---|
|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 (신설) |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 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공통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①(생략) | ②(제정안 제1항과 같음) |
| ②(생략) | ③(제정안 제2항과 같음) |
| ③위원은 공통사 및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④----- ----- 군수가 위촉한다. |
| ④(생략) | ⑤(제정안 제4항과 같음) |
| ⑤군수는 필요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⑥위원장은 필요시 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⑥(생략) | ⑦(제정안 제6항과 같음) |
| ⑦(생략) | ⑧(제정안 제7항과 같음) |
| ⑧(생략) | ⑨(제정안 제8항과 같음) |
| ⑨(생략) | ⑩(제정안 제9항과 같음) |
| ⑩(생략) | ⑪(제정안 제10항과 같음) |
| 제19조(전시물의 관리) ①(생략) | 제19조(전시물의 관리) ①(제정안과 같음) |
| ②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 ----- 가입하여야 한다. |

고성군공통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공통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군립공원내)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등) ①군수는 전시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관리 한다.

②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보호 및 전시물을 관리 운영한다.

③관리자는 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 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시관 관람료 및 관람권은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료 징수 등) ①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시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시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65세이상인 경로자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 어린이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 소지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람요금의 계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판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만취자,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낭무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병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는 전시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가 전시관의 각종 시설 또는 전시물을 폐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공룡사 및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간사는 담당공무원 1인을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⑧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평가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⑨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 까지 한다.

⑩평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심의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역사적 가치 및 구입 여부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⑪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시물의 구입) 군수가 전시관에 전시할 표본과 공통관련 유물, 기타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제17조(전시물의 기증) ①군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8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전시물의 관리)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전시물의 대여 등)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